한 국 공 인 중 개 사 협 회

(41250)대구 동구 동대구로 432 (신천동, 국제오피스텔건물) 4층 /전화 053-745-6382 /FAX 053-745-6385 / 김윤석

문서번호 경상북도회-1405

시행일자 2026.05.18

수 신 도회운영위원

참 조

선결			지시		
접수	일자 시간	. . .	결재.공람		
	번호				
처리과					
담당과					

제 목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안내의 건

1. 관련근거
   가.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21083호, 2025. 11. 11., 일부개정)
   나.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36294호, 2026. 5. 6., 일부개정

2. 위와 관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확정되어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□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」 주요내용

구 분	내 용
개정법률	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및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」
개정조항	법 제19조 개정, 제19조의2 신설, 시행령 제8조 신설
주요내용	**1.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(법 제19조)** **2.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 신설 (법 제19조의2)** - 임차인 요청 시 임대인은 관리비 부과 내역을 제공해야 함

	3. 관리비 항목 세분화 및 명시 (시행령 제8조) - 관리비 내역 제공 시 항목별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 **4. 월 관리비 10만원 미만인 경우 (시행령 제8조제3항)** - 관리비 내역 항목별 금액 생략, 포함 항목만 표시 가능
시행일	2026년 5월 12일 (시행 이후 체결·갱신 계약부터 적용)

※ 도회에서는 한방프로그램 <커뮤니티 - 시·도회 공지사항>에 게시 예정.

붙 임 : 1.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1부.
2.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. 끝.

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회장 